

도시관리계획(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고시

건설부고시 제353호(1983.11.14.)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33호(2006.04.20.)로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46호(2017.07.13.)로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5호(2022.04.21.)로 결정(변경)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양 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가구(BL 11)의 획지(11-1)(목동924, 924-3, 924-5)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경미한 변경 범위(최고높이의 20%이내) 내에서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 909번지 ~ 신정동 324번지 일대	714,871.4	-	714,871.4	90.5.28 서공고 제319호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 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지정용도(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높이계획(변경)

1)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최고높이 ^{주)}		비고
	기정	변경	
BL 2	50m 이하	(변경없음)	
BL 3	100m 이하	(변경없음)	
BL 4	100m 이하	(변경없음)	
BL 6	120m 이하	(변경없음)	
BL 7	170m 이하	(변경없음)	
BL 8	260m 이하	(변경없음)	
BL 9	170m 이하	(변경없음)	
BL 10	120m 이하	(변경없음)	
BL 11	130m 이하	155m 이하	11-1 획지
	130m 이하	(변경없음)	11-2 획지
BL 12	130m 이하	(변경없음)	
BL 13	180m 이하 (55층 이하)	(변경없음)	
BL 14	130m 이하	(변경없음)	
BL 15	80m 이하	(변경없음)	
BL 17	80m 이하	(변경없음)	
BL 18	80m 이하	(변경없음)	
BL 19	80m 이하	(변경없음)	
BL 20	80m 이하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BL13) - 기결정

주) 최고높이 한도 내에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사선제한(H=1.5D) 기준 미적용

2) 건축물 높이 변경 사유

구분	가구 / 획지번호	변경내용	결정사유
변경	BL 11 / 11-1	최고높이 변경 (130m→155m, 20%이내)	○ 높이계획 변경을 통해 통경축 확보 및 개방감 있는 도시경관 형성 ○ 도시스카이라인 형성을 통해 목동 중심지구의 중심성 강화

바.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변경(붙임참조)

4. 관계서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02-2620-350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은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면공지		차량통행금지구역	
자획선	대지분할가능선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	차량통행허용구간	차량통행금지구간
획지계획선	건축한계선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선용도로	BL 1	가구번호
				S1	차량용도로

지정번호		지정번호		지정번호	
BL 1	1000000	BL 2	1000000	BL 3	1000000
BL 4	1000000	BL 5	1000000	BL 6	1000000
BL 7	1000000	BL 8	1000000	BL 9	1000000
BL 10	1000000	BL 11	1000000	BL 12	1000000
BL 13	1000000	BL 14	1000000	BL 15	1000000
BL 16	1000000	BL 17	1000000	BL 18	1000000
BL 19	1000000	BL 20	1000000		

Scale 1 : 5,000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